

2011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

1. 감사목적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른 자체감사 운영 인프라 및 감사활동 개선 목적
 - 자체감사기능 활성화 여부,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 등 점검

2. 감사기간 및 인원

- 감사실시 기간: 2011. 11. 9(수) ~ 11. 11(금) / 11. 17(목) ~ 11. 18(금)
 - ※ 감사원(공공감사운영단)에서 2011.10.19.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외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 실시
- 감사관: 김규용, 박정우, 공영근(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제2과)

3. 감사결과

- 감사기구 운영 부적정
 - 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「위임전결규정」 운영
 - 감사와의 협의를 결여한 감사부서 직원 전보
- 공익근무요원 관리 부적정

4. 조치결과

- 감사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사에게 전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위임전결규정 개정 추진(2012년 6~7월 중 규정 개정 예정)
 - 연간감사, 정기감사 등의 계획 수립·보고에 대해 감사에게 전결권 부여 등
-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에 대해 감사와 협의 시행(2012. 1월 인사 시 기 시행)
 - 「감사규정」 제13조(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)에 근거
- 감사부서 직원 평정 예외 대상 확대(2012년 3/4분기 중 업무성과평가요령 개정 예정)
 - 직원평정 예외 대상을 감사전담직원에서 감사부서 직원으로 확대
- 공익근무요원 관리 관련자 5명 원장 명의 주의장 발부(2012. 5. 25)
 - 업무 관련자를 소환하여 원장이 직접 주의장 전달